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2-26

# 서 울 행 정 법 원

## 제 7 부

## 판 결

| | |
|---|---|
| 사 건 | 2017구합85139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청구 |
| 원 고 |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B |
| 피 고 | 1. [redacted]시 [redacted]구<br>2.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br>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
| 변 론 종 결 | 2018. 11. 15. |
| 판 결 선 고 | 2018. 11. 29. |

## 주 문

1.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2016. 12. 26.[1] 파산자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905,859,960원의 2006년도 지방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1) 2018. 4. 26.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2016. 12. 27.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하기로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2-26

주위적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 대한 청구취지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예비적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에 대한 청구취지 :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2016. 10. 17. 파산자 주식회사 A에 대하여 2006년도 법인세[2] 경정고지처분에 의하여 부과한 905,859,960원의 법인지방소득세 채권은 파산자 주식회사 A에 대한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이 아님을 확인한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지위

주식회사 A은 2003. 10. 30.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5. 1. 11. 방문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고, 2005. 4. 14.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A은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2014하합100072호)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주식회사 A'과 '원고'를 파산선고 전후에 관계없이 '원고'라고 한다).

#### 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급

1) 원고는 2006. 3. 31.경 [redacted]세무서장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14,766,545,890원으로, 세액을 3,679,636,470원으로 신고하고, 2006. 4. 30.경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하 '피고 [redacted]구청장'이라 한다)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로 207,899,460원을 신고하였다.

2) 원고는 경영악화로 위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에서 2006사업연도에

2) 청구취지에 기재된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2-26

24,447,608,999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자 2007. 3. 31. [redacted]세무서장에게 구 법인세법(2007. 7. 19. 법률 제851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여 2005사업연도에 신고한 법인세액 3,679,636,470원을 환급(이하 '이 사건 법인세 환급금'이라 한다)받았다. 위와 같이 법인세 환급이 있자 피고 [redacted]구청장은 2007. 4. 30.경 원고가 2005사업연도에 신고한 법인세할 주민세 207,899,460원을 환부(이하 '이 사건 주민세 환급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후발적경정 사유에 따른 법인세의 환급**

1) 원고는 방문판매원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공유마케팅 방식(일정금액 이상을 구매하여 다단계판매원 등 회원이 되면 추가로 상품을 구매하여 포인트를 얻을 때마다 구매대금의 일정배율을 투자금으로 배당받는 판매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원고의 회원들은 2014년과 2015년 원고를 상대로 재화공급거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3037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4763호), 2015. 10. 3.과 2016. 7. 26. '원고와 회원들이 2005년에 한 공유마케팅 거래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가 아니라 금융거래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9. 1. [redacted]세무서장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따라 [redacted]세무서장은 2016. 10. 20. 원고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4,345,833,75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 4,035,527,260원을 환급하기로 결정하였다(다만, 위 법인세 환급에 따라 2005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 또한 원고에게 환급되었는지 여부는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2-26

**라. 법인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정고지처분**

1) [redacted]세무서장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인 2005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10. 17.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6항에 따라 원고에게, 환급세액 3,679,636,474원과 위 금액에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인 2007. 4. 1.부터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고지일인 2016. 10. 1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 분의 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 3,850,371,606원[= 3,679,636,474원 × 0.1095(= 3/10,000×365) × 3,488/365, 원 미만 버림]의 합계액 7,530,008,080원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위와 같은 법인세 경정·고지 사실을 피고 [redacted]구청장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 [redacted]구청장은 2016. 12. 26. [redacted]세무서장이 원고에게 경정·고지한 법인세 및 가산금의 합계액 7,530,008,080원의 10%인 753,000,800원을 2006사업연도의 지방소득세로 경정 고지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 152,859,160원을 합산한 905,859,96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1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바. 관련 사건의 경과**

한편, 원고는 [redacted]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3. 30.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2928호로 청구기각 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2-26

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누42957호)이 진행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 가. 주위적 피고 [redacted]구청장에 대한 주장

이 사건 주민세 환급금은 구 법인세법 제72조에서 정한 결손금 소급공제로 인한 환급 결정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환급된 것이다. [redacted]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법인세 환급금을 징수하는 이 사건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과다하게 환급된 환급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 [redacted]구청장은 이에 대응하는 부당이득 환수 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주민세 환급금을 추징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에 따른 환급세액을 법인세로 보아 2006사업연도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세할 지방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예비적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에 대한 주장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한 때에 비로소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확정되어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민세 환급금이 과다환급됨에 따라 이를 추징하는 것이므로 그 추징 시에 환금급 채권이 성립한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2006년도 법인세 경정고지처분에 의하여 부과한 905,859,960원의 법인지방소득세 채권은 파산선고일인 2014. 10. 16. 이후인 2016. 10. 17.에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2-26

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3. 주위적 피고 [redacted]구청장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redacted]구청장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이하 '피고 [redacted]구'라 한다)를 상대로 피고 [redacted]구의 원고에 대한 2006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채권이 재단채권 내지 파산채권이 아님에 대한 확인을 구하였다가 추후 피고 [redacted]구청장을 공동피고로 추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하였다. 주위적 청구로 추가된 청구와 종전의 청구 사이에는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취지 변경은 부적법하다.

나) 청구취지 변경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2016. 12. 27.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8. 4. 26.경 피고 [redacted]구청장을 공동피고로 추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주위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청구취지 변경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1) 원고가 2017. 11. 16. 피고 [redacted]구를 상대로,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2016. 10. 17. 파산자 주식회사 A에 대하여 2006년도 법인세 경정고지처분에 의하여 부과한 905,859,960원의 법인지방소득세 채권은 파산자 주식회사 A에 대한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2-26

(2) 원고는 2018. 4. 26. 피고 [redacted]구청장을 공동소송인으로 추가함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소송추가 신청을 하였다. 그와 동시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피고 [redacted]구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파산자 주식회사 A에 대하여 2006년도 법인세 경정고지처분에 의하여 부과한 905,859,960원의 법인지방소득세 채권은 파산자 주식회사 A에 대한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피고 [redacted]구에 대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하였다.

(3) 이 법원은 2018. 4. 27. 위와 같은 원고의 피고 추가 신청을 허가하였다.

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은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42조에 따라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한편,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2-26

4441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위적 피고 [redacted]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2006년도 법인세 경정고지처분에 의하여 부과한 905,859,960원의 법인지방소득세 부과·고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이고, 원고의 예비적 피고 [redacted]구에 대한 청구는 2006년도 지방소득세 채권의 성립시기가 파산선고 이후로서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모두 원고에 대한 2006년도 지방소득세 부과·고지 처분과 관련된 분쟁에 해당되므로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할 수 있는 때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으로 비롯된 피고 [redacted]구의 2006년도 지방소득세 채권의 성립시기가 원고의 파산선고일 이후라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다투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법률상 양립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redacted]구청장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2016. 12. 27.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8. 4. 26.경 피고 [redacted]구청장을 공동피고로 추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기는 하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68조 제3항에 의하면, 예비적 피고가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피고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소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기각 결정이 있었던 2017. 9. 19.로부터 90일 내인 2017. 11. 16. 제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피고 [redacted]구청장에 대한 항고소송은 제소기간을 준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2-26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본안 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의 법적 성질

구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는 일정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인정된 제도로서 납세자의 신청에 기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이월결손금의 발생 등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환급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환급청구권이 비로소 확정되므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은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위 환급세액의 성질은 과오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5590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다20661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구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 착오환급한 환급세액을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다20661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2-26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에서 그 징수할 법인세액과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서 "이 경우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에 따른 징수절차는 과세관청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라 세액의 환급을 결정하였다가 사후적으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실체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환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중에서 위와 같은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따라 환급금을 다시 환수하고 나아가 환수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공법상 부당이득금에 대한 특별 징수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업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와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에 따라 부과된 세액은 이 사건 법인세 환급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공법상 부당이득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주민세 환급금 및 그 반환절차의 법적성질

구 지방세법 제178조 제2항(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구 법인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2-26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78조 제2항에서 법인세의 결정·경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과세표준신고는 하였지만 그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어 이를 시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3항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결정은 구 지방세법 제178조 제2항의 결정·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5590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가 일정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인정된 제도로서 과세관청이 환급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환급청구권이 비로소 확정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위 환급세액의 성질은 과오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지방세법 제178조 제2항은 구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볼 때 구 지방세법상 소득할 세액의 환부 결정 역시 구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결정과 그 법적 성격이 같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라 법인세액의 환급을 결정하였다가 사후적으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실체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환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명되어 그 법인세액을 환수한 경우에 그 환수금이 공법상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 지방세법상 환부금의 반환금 역시 공법상 부당이득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2-26

위와 같은 이 사건 주민세 환급금 및 그 반환 절차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볼 때, 사후적으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실체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환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납세자에게 환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환급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redacted]구청장은 이 사건 법인세 환급금에 대한 반환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주민세 환급금에 대하여 그 반환을 위해 구 지방세법 제178조 제2항이 정하는 추징절차에 따른 추징 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redacted]구청장은 이 사건 처분서인 원고에 대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납세고지서에 이 사건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에 따른 2006사업연도 법인세 7,530,008,080원(환급세액과 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기재한 사실, 과세대상인 사업기간을 '2006. 1. 1.부터 2006. 12. 31.'로 명시하고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753,000,800원을 지방소득세로 부과하였고, 그에 대한 무신고·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152,859,160원을 별도로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주민세 환급금에 대한 추징절차로 볼 수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전혀 기재가 없다. 위와 같은 과세표준의 내용, 과세기간, 지방소득세 산정금액 및 가산세 부과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 [redacted]구청장은 이 사건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환급금에 대한 반환 처분이 아닌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으로 보아 그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이 정한 환급금의 반환 범위를 넘어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법령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2-26

취소되어야 한다.

**4. 예비적 피고 [redacted]구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한 905,859,960원의 법인지방소득세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 [redacted]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 [redacted]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2-26

별지

# 관 계 법 령

▣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稅額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⑥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7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이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2-26

출세액(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이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법 제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text{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이하 이 조에서 "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 \times \frac{\text{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text{소급공제 결손금액}}$$

⑤ 법 제72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법인세액
2.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2-26

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함에 있어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2조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개정 2005. 12. 31.>)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172조 (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4.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176조 (세율)

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177조의2 (신고 및 납부 <개정 2003. 12. 30.>)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稅額이 決定 또는 更正되는 경우에는 그 告知書의 納付期限, 申告期限을 延長하는 경우에는 그 延長된 申告期間의 滿了日, 修正申告를 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日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2-26

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78조 (소득할의 계산방법)**

①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 구 국세징수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2-26

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4. 삭제 <1996.12.30>

③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하고, 잔여금을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⑤ 국세환급금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수입금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⑦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끝.